

關稅 業務에 관한 개선案 確定

—輸出入業界 建議事項에 대한 措置—

- ◇…本会는 지난 2月 20日字에 일선 輸出業체의 업무를 원활히 하…◇
- ◇…기 위해 關稅府 소관 業務에 관해 적절한 개선을 요하는 事項을…◇
- ◇…建議한바 있는데 이번에 關稅府으로부터 그 결과가 나왔다. …◇
- ◇…당초 本会는 22件을 건의했는데, 이중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12…◇
- ◇…件(○)이며, 협행 제도의 활용이 7件(△), 건의가 부결된 것이…◇
- ◇…3件(×)으로 나타났다. (괄호안의 부호는 本文에 표시하여 알…◇
- ◇…기 쉽게 하기 위함.) …◇
- ◇…다음에 그 내용 全文을 소개한다. 各業체 실무자의 業務에 活用…◇
- ◇…하기 바란다. …◇

I. 建議事項

□ 輸出通關業務

件名	建議內容	措置內容
1. 海外加工·修理 를 目的으로 搬出하는 境遇의 通關節次 簡素化 (△)	国内에서 修理가 不可能한 物品을 海外에서 修理·加工하기 위하여 搬出할 때 国内 修理不可能證明書 提出을 요구하나 同證明書 發給機關이 없으므로 通關時 마찰을 야기함으로 国内修理 不可能證明書 提出省略 要望.	物品의 修理·加工을 外国에서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稅關長의 認定하는 경우에는 無換輸出이 可能하며 海外修理 타당성은 技術的인 側面에서의 事由만 提示하면 通關이 可能하고 別途로 国内修理不可能 証明書의 提出은 要하지 아니함. (参照：貿易去來法施行令 第45條 19號)

□ 輸入通關業務

件名	建議內容	措置內容
1. 輸入通關殘量 證明書 發給의 簡素화(○)	輸入通關殘量證明發給時 通關地 稅關을 明記하고 前回의 通關殘量證明 添附書類一切을 첨부케함으로서 業務処理의 頻雜	輸入通關殘量證明發給時 用途는 稅關業閑用으로 記載하여 申請하면 特定稅關을 指定하지 아니하여도 發給이 可能하며 輸入通關殘量證明書에는 輸入許可書 写本 1部만 첨부하면 残量證明發給이 可能도록 함.
2. 無換受託加工 貿易 資材通關 (○)	輸入되는 資材의 送狀에 原資材名 과 単価金額이 詳細히 表示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所要量 証明書로서 補充資料를 認定하여 通關要望.	品名과 資材別 價格이 包括的으로 記載된 경우에는 L/C 開設時 첨부한 Offer Sheet를 첨부하여 輸入資材의 物品別 內譯을 確認할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認定通關토록 함.

□ 指定税関制度

件 名	建 議 内 容	措 置 内 容
1. 指定税関制度 事後評価 追徴告 知(△)	指定税関 登録業体에서 CCCN分類相 異 事後評価 等으로 追徴할때 納付期 限을 告知日로부터 20일 간으로 하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하여 徵収猶豫期間 까지 納付 할 수 있도록 改善要望.	輸出用原資材에 대한 CCCN 相異 事 後評価로 인한 課稅價格 變動이 있어 追加告知하는 경우 追加稅額에 대하 여도 既免許된 輸出用原資材 諸稅 徵 収猶豫期間까지 徵収猶豫 할 수 있음. (참조: 還給特例法 第5條)

□ 見品通関業務

件 名	建 議 内 容	措 置 内 容
1. 輸出物品 見本 類의 通関(○)	電子製品의 TV 3臺 等과 같이 輸出物 品의 見本通關 許容수량이 제한되고 있는 바 이를 改善하여 金額別 通關限 度量 制度로 전환 要望.	우리나라 商品의 輸出促進을 위하여 搬出하는 輸出商品見品類는 稅關長이 반출사유가 타당하다고 認定하는 경우 에는 物品別 수량에 구애됨이 없이 合 理的인 수량에 대하여 輸出을 許容하 도록 措置 (참조: 訓令 제82-217호, 82. 5. 12)
2. 輸入商品 見本 類 通關時 真正 化 作業(○)	商品見本類 通關時 真正化 作業을 省 略하고 課稅 通關하고 있는데 一定期 間 事後管理하는 條件으로 免稅處理 要望.	商品見本으로 認定되는 見品에 대하여 는 真正化 作業을 하지 아니하고 免 稅處理하도록 措置. (참조: 訓令 제82-217호, 82. 5. 12)
3. 見本輸入通關 (○)	美國에서 送付되는 見本에 대하여 送 狀을 提示받아 通關을 하는데 見本은 送狀이 없으므로 過去 輸入한 免狀으 로 通關可能하도록 措置要望.	見品은 送品狀을 提示하지 아니하여 도 通關이 가능한 것이나 物品의 確認 에 필요한 카타로그, 價格資料, 從前 의 輸入免狀 等을 提示하면 通關의迅 速을 期할 수 있음. (참조: 訓令 제82-217호, 82. 5. 12)
4. 電子機械部分 品 通關(○)	部分品 見品 搬出時 数量過多라는 理 由로 通關不許하는 事例가 있는바 輸 出免狀 및 該當 모델의 所要量을 첨부 할 경우 輸出免許 토록 要望.	輸出商品 見品類는 稅關長이 搬出 사 유가 타당하다고 認定하는 경우에는 物品別 수량에 구애됨이 없이 合理的 인 数量에 대하여 輸出을 許容하도록 措置. (참조: 訓令 제82-217호, 82. 5. 12)

□ 還給關係業務

件 名	建 議 内 容	措 置 内 容
1. 輸入免狀의 有 効期間(○)	内国信用狀 또는 購買承認書 等에 의 한 多段階供給으로 輸出하는 경우는 現行 輸入免狀有効期間 1年 6月 을 2 年으로 改正 要望.	輸入免狀有効期間 1年 6月 은 対応輸 出履行期間으로서는 充分하다고 認定 되나 多段階 加工 内国輸出物品中 長 期間을 要하는 品目이 있으면 調査하 여 檢討後 措置할 것임.

件 名	建 議 内 容	措 置 内 容
2. 還給申請機関 擴大(△)	輸出通關稅關(出張所) 및 그 管轄稅 關에서도 還給申請할 수 있도록 措置 要望	現行制度上 輸出通關稅關 및 管轄稅 關에서 還給申請이 可能함.
3. 内需用輸入免狀 에 대한 還給 申 請機關(×)	内需用으로 輸出用原材料로 使用하였 을 경우, 内需用輸入免狀에 대한 関 稅還給을 韓国外換銀行에서도 可能토 록 改善 要望.	内需用輸入免狀을 輸出等에 供하고 還 給申請하는 경우에는 그 使用事由 를 確認하여 過多還給與否를 紛明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는 還給業務 및 通 關業務를 專門的으로 取扱하는 稅關 에서 紛明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임으 로 外換銀行에서의 還給은 困難하고, 還給申請稅關을 全國稅關으로 擴大하 였음. (参照 : 告示 第82-294號, 82. 4. 1)
4. 違約物品 等의 關稅還給(○)	違約物品 等의 関稅還給時 関稅 等納付 領收証을 要求하고 있는바 이는 業務 의 繁雜만을 招來하므로 改善要望.	關稅還給申請時 関稅 等 納付領收証을 提出할 必要가 없으므로 이의 是正을 還給機關에 施達하였음. (参照 : 還給1274. 4 - 762號, 82. 3 . 25)
5. 電子製品에 대 한 所要量告示 (○)	所要原材料別, 規格別로 所要量을 告 示하여 還給業務가 過多하게 되므로 規格을 無視한 所要原材料別로 所要 量을 告示하고 이에 따라 関稅還給要 望.	所要量告示를 簡素化하도록 工業振興 廳에게 要請하였음. (参照 : 還給1274. 4 - 556號, 82. 3 . 25)
6. 駐韓美軍販賣 物品 還給機關 및 還給申請(○)	還給機關 : “納品地管轄機關”에서 “供 給者管轄稅關”으로 改定要望. 還給申請 : “軍納業者”에서 “完製品로 칼供給者”로 改正 要望.	完製品供給者에게 還給申請權은 賦與 하였으며 住所地 管轄機關에서도 還 給申請이 可能하도록 還給機關을 擴 大 措置하였음. (参照 : 告示 第82-294號, 82. 4. 1)
7. 一括還給申請 (還特法施行令第 9條의 2)(×)	同一輸出免狀에 CCCN(8 単位)이 相 異한 輸出品이 同時 通關되는 경우 CCCN(8 単位)이 相異한 物品은 輸 出免狀을 分割하여 還給申請할 수 있 도록 許容要望.	輸出免狀을 分割하여 還給申請하는 경 우에는 所要原資材에 대한 輸入免狀 도 分割하게 되므로 一括還給申請하 는 것보다 還給業務가 오히려 繁雜하 게 됨.
8. 法定處理日數 (還特法施行에 관 한 事務處理要領 第17條) (○)	電子製品의 경우는 輸出品目 1種目 일 경우 7 日 輸出品目 1種目 追加時 1日追加	還給處理期間을 短縮調整하고, 概算 額支給 要件을 緩和措置하여 概算額 支給制度를 積極活用하도록 改善하였 음. (参照 : 告示 第82-294號, 82. 4. 1)
9. 部品로 칼業體 의 還給申請(×)	部品로 칼 供給業體에도 還給申請權 賦 與要望.	還給特例 法上 関稅還給은 輸入原材料 를 輸出에 供한 후에 申請하여야 하므로 輸出 履行前에 内國輸出者에게 還 給하는 것은 法上 곤란함.

件 名	建 議 内 容	措 置 内 容
10. 定額還給節次 簡素化 (○)	单一製品이지만 製品規格別로 還給計算하여야 하는 現行制度를 改善하여 单一製品의 경우는 同一코드로 還給申請할 수 있도록 措置要望. (例 : Polyester Toilm Condenser)	同一코드番號로 一括還給申請하도록 措置하였음. (参照 : 還給1274. 4 - 762號, 82. 3. 25 25)

□ 其他

件 名	建 議 内 容	措 置 内 容
1. 保税工場의 物品搬入申告와 檢查 (△)	保税工場에 계속 反復的으로 搬入되는 物品으로서 同一規格의 物品은 搬入検査는 書面 檢査로 하여 줄 것.	保税工場에 계속 反復的으로 搬入하는 同種 同質의 物品으로서 監視 監督에 文障이 없는 物品은 書面·検査함. (参照 : 告示 第81-241號 第13條)
2. 積荷目錄 訂正 (△)	積荷目錄 訂正時에 I/L 및 L/C에 輸入者의 名義가 表記되어 있는 경우에도 法人의 인감증명을 요구하고 있는 事例가 있는 바 이의 改善 要望.	積荷目錄 정정을 할 때 I/L 또는 L/C에 輸入貨主가 明示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은 提出할 必要가 없는 것임.
3. 返送 節次 (△)	通關保留된 物品을 返送 免許한 後 ITC 만 利用하여 保税運送함으로서 적기 船積이 困難함.	通關保留된 物品의 返送은 外國物品 狀態로 送付하는 것이므로 不正 流出의 우려가 있어 保税運送業者가 運送하고 있으나 本人이 直接 運送하고자 하면 關稅의 擔保를 提供하고 稅關長의 承認을 받아 運送할 수 있음. (参照 : 告示 第80-226號)
4. 保税運送制度 의 簡素化	保税運送 免許時 船積書類 대신 保税運送 申告書와 積荷目錄의 対照確認만으로 指定 稅關 登錄業體는 保税運送 可能하도록 改善 要望	保税運送을 申告하려면 輸入許可書, 送品狀, 包裝明細書 등을 添付하여야 하나 檢査省略, 擔保提供省略, 其他 稅關長이 認定하는 物品은 輸入許可書 写本만 提出하면 保税運送을 許可할 수 있음. (参照 : 告示 第80-226號)

II. 稅關窗口에서 본 輸出通關 애로사항

• 一線稅關

件 名	建 議 内 容	措 置 内 容
1. 稅關 檢查職員 不足	輸出物量은 15%씩 增加하고 있으나 稅關 檢查職員은 限定되어 있어 적기 檢査가 곤란함. 특히 輸出申告의 午後 集中으로 輸出検査가 지연됨.	① 輸出 申告人과 貨主에게 輸出申告의 午後 集中으로 通關이 지연되고 있음을 弘報하여 輸出申告를 分散하여 申告하도록 誘導할 것. ② 專門 鑑定要員 양성, 人員增員 等으로 人力不足으로 인한 通關遲延事例가 없도록 措置하겠음.

件 名	建 議 内 容	措 置 内 容
2. 輸出検査法에 의한 檢査省略 物品의 檢査	輸出検査法에서 優秀業体의 生産品에 대하여 檢査省略하고 있는데 이러한 物品에 대하여는 稅關検査를 省略도록 改善要望.	輸出検査法에 의하여 檢査가 省略되는 優良業体의 生産品에 对하여는 稅關長이 輸出業体의 誠實度와 物品의 性狀을 把握하여 檢査省略하도록 할 것. (参照: 総括1275-196號 '82. 5. 11)
3. 反復輸出物品 檢査省略	1個月内 輸出実績이 있는 物品에 대한 檢査省略 猶豫期間을 2個月로 延長 要望.	稅關長이 輸出業体의 誠實度 物品의 性狀을 把握하여 檢査省略하도록 할 것. (参照: 総括1275-969號 '82. 5. 11)
4. 書類 補完	船積期日이 緊急한 物品에 대한 輕微한 事項은 輸出免許後 事後補完할 수 있도록 措置 要望.	輸出許可事項과 現品의 重量·規格 등이 相異할 때에는 稅關長이 現品대로 訂正하여 輸出免許하도록 措置 (参照: 例庫140-0-0-4號 '82. 5. 3)
5. 檢査合格証 発給未備	輸出検査 合格証을 発給할 때 輸出許可書에 記載된 所要 原資材 内역의 記載가 누락됨으로서 輸出物品의 正確에 대한 審査業務에 隘路가 있음.	輸出検査証 発給을 할 때에는 輸出許可書에 記載된 所要原資材를 確認하여 檢査証을 発給하도록 措置 (参照: 総括1275-709號 '82. 4. 5 檢行1341-4932號 '82. 5. 19 出日1312-2451號 '82. 6. 17)
6. 輸出許可書와 輸出検査証 訂正印 누락	輸出許可事項 및 輸出検査事項의 訂正을 할 때 訂正印이 누락되어 訂正事項의 正當性을 認定할 수 없음.	輸出許可書와 檢査証을 訂正할 때에는 반드시 訂正印을 날인하여 訂正事項의 正當性 確認에 錯誤 없도록 措置 (参照: 総括1275-709號 '82. 4. 15 檢行1341-4932號 '82. 5. 19 出日1312-2451號 '82. 6. 17)
7. CCCN分類 相異時의 通関	輸出許可 받은 品目은 輸出自動承認品目이나 現品 檢査結果 輸出規制品目으로 CCCN이 分類될 때에는 輸出許可事項을 訂正한 후 通關함으로 处理가 지연되는 바 輸出物品은 品名, 規格이 許可事項과 一致하는 경우에는 通關許容할 수 있도록 改善要望.	輸出許可事項과 現品의 CCCN이 相異할 경우 变更될 CCCN이同一 推薦機関의 추천을 받은 物品일 때에는 稅關長이 確認한 CCCN으로 輸出免許하도록 措置 (参照: 例規140-0-0-4 '82. 5. 3)
8. 海外工事用機資材 許可書発給	海外工事用 機資材에 대한 搬出確認書를 海外建設協會에서 稅關에 送付함으로서 致着이 지연되어 輸出通關이 곤란함으로 業者가 持參할 수 있도록 改善要望.	海外工事用 機資材 搬出確認書는 建設業者에게 直接交付하여 輸出申告하도록 改善 措置 (参照: 総括1275-1103號 '82. 4. 29 海建協第10467號 '82. 4. 21)
9. 輸出検査 合格証 発給遲延	輸出検査機関에서 檢査合格証 発給이 지연되어 輸出通關이 늦어짐으로서 適期 船積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輸出検査機関의 檢査合格証 発給의 迅速이 要望됨.	輸出検査所에서는 輸出物品検査의 迅速을 期하기 위하여 夜間에도 檢査現場에서 檢査証을 発給하고 있으며 城南과 仁川地域에는 韓國衣類検査所를 下半期에 増設할 計劃임. (参照: 総括1275-709號 '82. 4. 10 出日1312-2451號 '82. 6. 17)

件 名	建 議 内 容	措 置 内 容
10. 水産物 輸出検査合格証	水産物 檢査 合格証에는 品名, 規格 만 記載함으로 輸出 許可 받은 物品인지의 確認이 곤란함.	水産物 輸出検査機関에서 輸出物品에 輸出 許可番號 等을 記載하도록 協調 要請. (参照 : 総括1275-709號 '82. 4. 10)
11. 輸出推薦書 確認徹底	輸出推薦 対象物品을 推薦 없이 輸出 許可 함으로서 輸出通關審查에 混亂超來	輸出許可機関인 外國換銀行에 輸出許可時 該當推薦書 徵求를 彻底히 確認 하도록 注意 促求 했음. (参照 : 総括1275-709號 '82. 4. 10)
12. 輸出許可事項 相異	輸出許可된 事項과 輸出検査 받은 合格証上의 品名, 規格이 相異된 경우 許可事項의 訂正으로 通關遲延.	輸出許可된 事項과 檢査合格証上의 重量, 規格이 相異한 경우에는 稅關長이 訂正하여 輸出 免許할 수 있도록 措置. (参照 : 例規140-0-0-4, '82. 5. 3)
13. 輸出検査 合格証 早期発給	輸出物品의 製造完了 以前에 事前 発給함으로서 窓口 마찰 発生	輸出検査 合格証의 事前 早期発給 事例가 有도록 輸出検査機関에 協調 要請하였음. (参照 : 総括1275-709號 '82. 4. 10)
14. 輸出事項 記載 錯誤	輸出申告書의 記載事項 錯誤로 内容 訂正을 요하여 通關 遲延	関税士会에 関税士로 하여금 輸出入 申告書의 午後 集中申告와 申告書 作成上의 오류를 防止할 수 있도록 主意 促求 (参照 : 総括1275-1298號 '82. 6. 25)
15. 現品의 重量未達	現品의 重量이 通關許容 基準数量을 超過하여 輸出通關 遲延	現品의 重量이 未達하드라도 不正輸出의 혐의가 없다면 稅關長이 現品대로 通關을 許容하도록 措置. (参照 : 例規140-0-0-4 '82. 5. 3)